I·SEOUL·U 너와 나의 서울

설명자료

제공일자 : 2020년 10월 20일	서울어린이대공원장	오 정 우	450-9301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	시 설 팀 장	손 성 일	450-9304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매수 : 4매	담 당 자	김 우 중	450-9203

서울시, 위험한 놀이동산 개장 재촉

(2020. 10. 20. 경향신문, 헤럴드경제)

〈 설명내용 〉

◆ "서울시가 6년 전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재조성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을 알고도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"는 보도 관련

- 개장 전 서울시 감사('14.6.26~7.15)결과 지적사항 91건 중 90건을 보완 완료 후 개장('14.8.27)하였음 (1건은 시민이용과 관련이 없는 점검시설로 추후 보완함주)

*주) 추후 보완 : 드롭타워 점검자 안전시설로 당시 하중 관계상 시행곤란(원 제작사 의견)하여 추후 탈부착식 점검난간 설치

◆ "시설 영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개장을 재촉한 정황도 확인됐다"는 보도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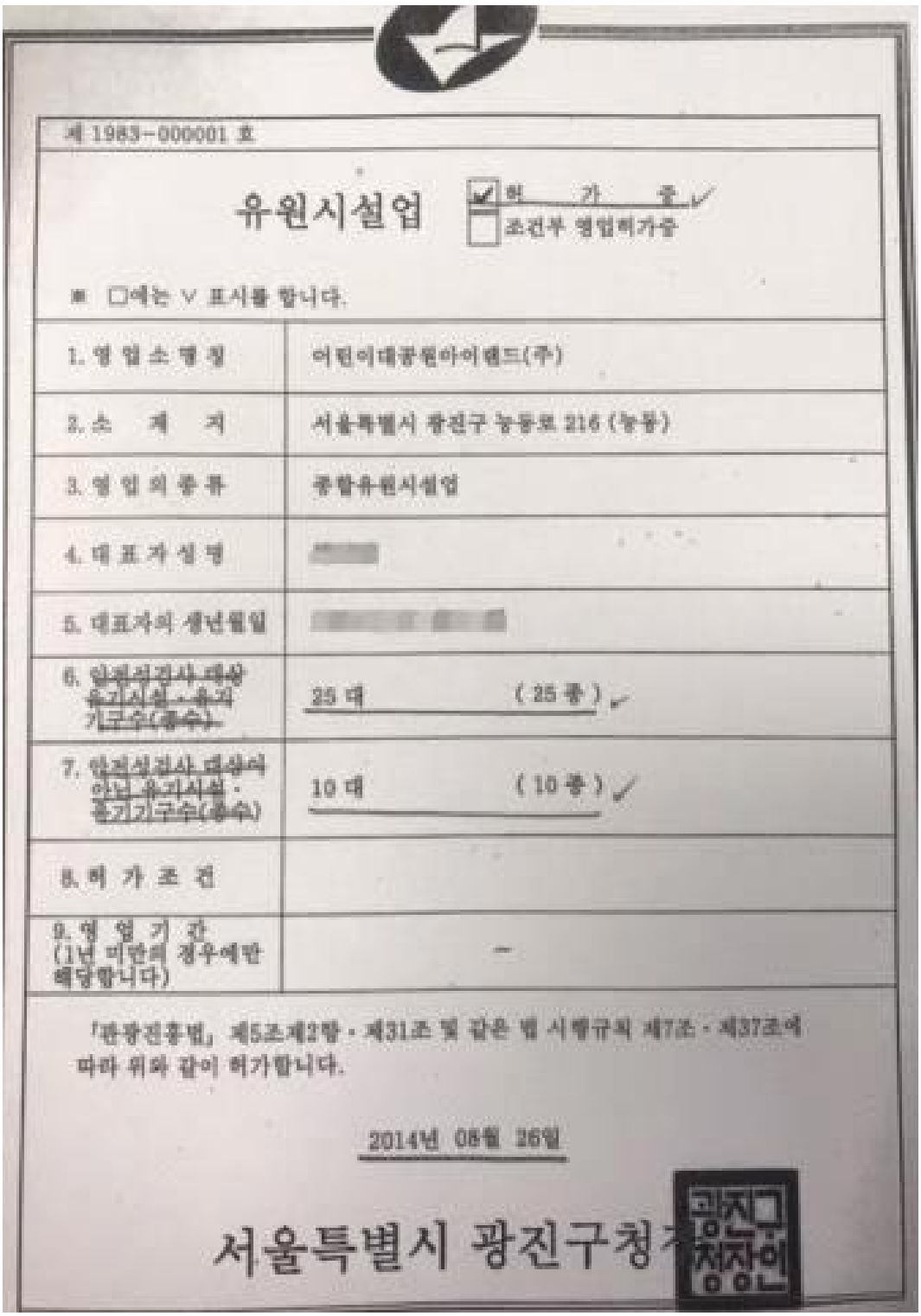
-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상 안전성검사 신청은 '유원시설업 영위자'로 되어 있으나, 서울시가 직접 발주한 시설로 市 책임하에 직접 검사 신청 및 결과 수령하였음
- 추후 운영업체의 관할구청 영업변경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구청과 이견이 있었으나, 문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·허가('14.8.26) 완료 후 개장한 것임(별첨 1)

◆ "놀이동산 운영업체와의 사용료 법적 공방" 관련

- 과거 세 차례 법원조정을 거쳐 종결된 사항이며(별첨 2)
- 위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이미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과 분쟁을 통해 해결해 온 것으로 판단, 업체의 주장을 '각하'하였음

벌첨 1

유원시설업 허가증(재개장전 운영업체 수령)



제 1983-000001 호

유원시설업 ☑ 허 가 증 ☐ 조건부 영업허가증

※ □에는 V 표시를 합니다.

1. 영 업 소 명 칭	어린이대공원아이랜드(주)
2. 소 재 지	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(능동)
3. 영 업 의 종 류	종합유원시설업
4. 대 표 자 성 명	[redacted]
5. 대표자의 생년월일	[redacted]
6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·유기기구수(종수)	25 대 (25 종) ✓
7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·유기기구수(종수)	10 대 (10 종) ✓
8. 허 가 조 건	
9. 영 업 기 간 (1년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-
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·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·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2014년 08월 26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광진구청장인

별첨 2

법원 조정 및 소송 경위

○ 소송 5회 — 법원강제조정 3회(민사소송), 행정심판, 행정소송 각 1회

○ 협약기간 연장 8년 9개월, 사용료 조정 약 37.5억

○ 업체 정상화를 통한 시민서비스 및 안전 제고 기대하에 법원조정을 수용하였으나, 업주는 동일한 주장을 반복

☐ **1차('09~'10년)**: 체납(61.5억) → 공단 민사소송 제기 → 법원조정

- 주요 조정내용: 협약 3년 연장, 사용료 조정(→43.3억) 및 5년 분납 등

* '10. 4월: 대표이사 변경

☐ **2차('13년)**: 체납(28.3억) → 업체 민사소송 제기 → 법원조정

- 주요 조정내용: 체납금 연장 및 분납 허용

* '12~'14년: 재조성공사(市 재정사업), 협약 2년 2개월 연장

☐ **3차('15~'17년)**: 체납(25.9억) → 업체 민사소송 제기 → 법원조정

- 주요 조정내용: 협약 3년 7개월 연장, 사용료 조정(→18.7억) 등

《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결정문 》

1. 서울중앙지방법원「1차 강제조정 결정문」발췌(2016.10.18.)

동산 운영기간 중 임부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점, 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자산금 등 지급채무가 누적된 원고를 인수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,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

2. 서울중앙지방법원「최종 강제조정 결정문」발췌(2017.2.7.)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☐ **4차('19년)**: 체납(28.4억) → **업체 행정심판 제기 → 인용재결**

- 조치사항: 사용료 조정('18년분 28.4→21.8억 / '19년분 30→24.5억)

☐ **5차('20년)**: 체납(46.3억) → **업체 행정소송 제기 → 각하**

《 서울행정법원「판결문」발췌(2020.8.27.) 》

음에도 피고가 실제 위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, 당사자들 역시 과거 약 10년 동안 민사소송 제기 및 후속협약의 체결을 통해 사용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.

라. 이 사건 사용료 부과가 공유재산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유재산법령에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,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, 처분에 앞서 변경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※ 3차 강제조정결정문에서 제조성공사로 인한 일체의 민사, 형사,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, 5차 행정소송시 동일한 주장 반복

《 2017.2.7.일자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결정문 》

6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, 이 사건 청구원인인 2012. 7.경부터 2014. 8.경까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공사로 인한 운영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민사, 형사,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.

《 2020.2.26일자 행정소송 시 업체 소장 》

다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협약 및 보충협약 I, II 체결 10
1) 2010. 6. 25.자 추가협약 체결 10
2) 이 사건 놀이동산의 전면 재조성 사업 실시로 인한 휴장 10
사) 원고 사주의 원고 인수과정과 미납 사용료 납부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7